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준수사항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법원은 범죄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출제한, 출입금지, 손해회복의 노력의무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위한 분류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라.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법 제45조의2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마.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 마련(법 제65조제3항)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를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 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74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을 “동일한 상호는”으로 한다.

제80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법 개정이유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 완화(법 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법 제81조제11호 단서 및 제82조제5호 단서 신설)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 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